

##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우수사례】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예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예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등)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2. 인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예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회피 :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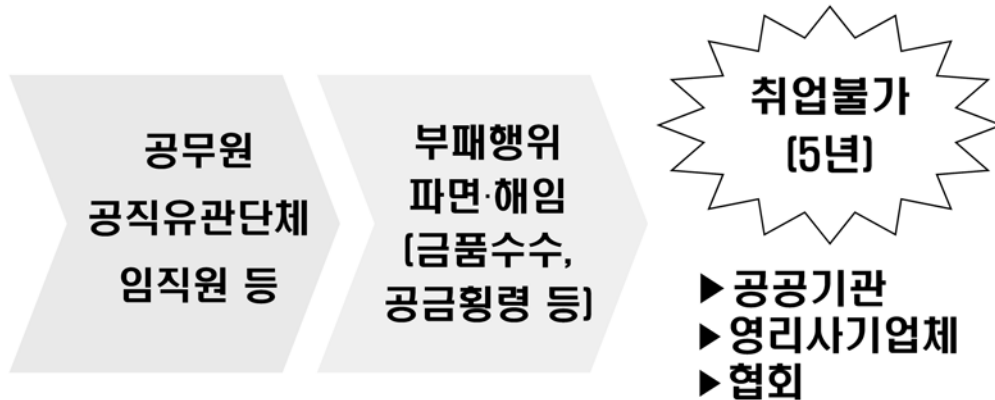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 의원면직 관련 부패사례('10.3월, 감사원)

- ○○공단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직원에게 의원면직 승인  
→ 사기업체 재취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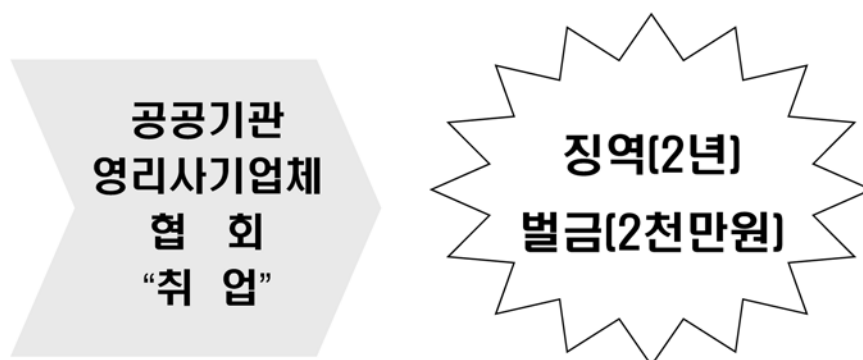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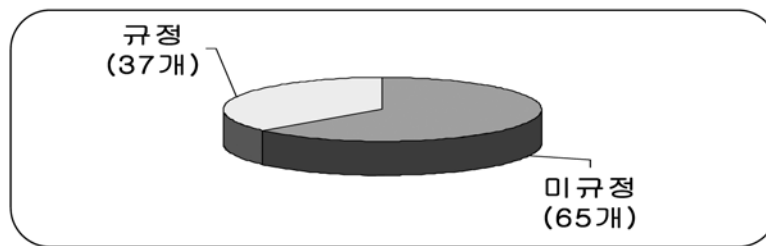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미비

#### 〈비위조사 임직원 의원면직 제한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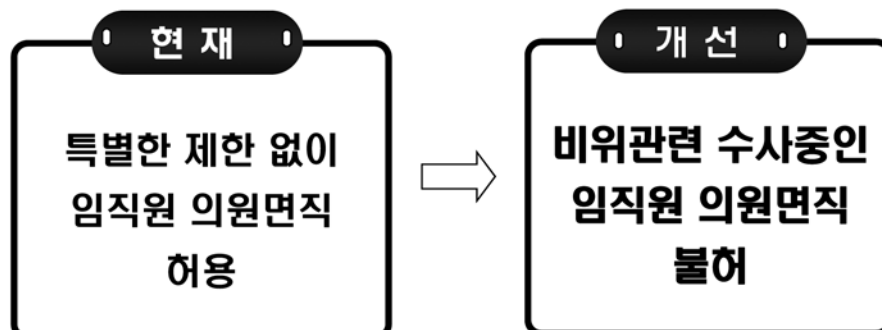


- ▶ 규정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 개선방안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직원 : “의원면직 불허”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우수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

##### 제51조(의원면직)

- ②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 3.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참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감사원, '05.2월]

- 감사원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 처리 불가
- 의원면직 신청을 받은 임용기관은 감사원과 수사 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 징계 관련 부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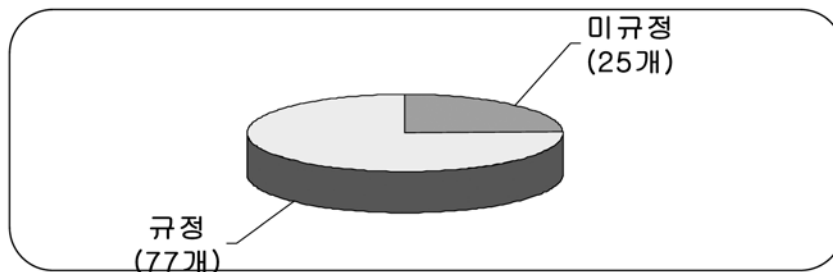
- ○○기관('10.3월, 감사원)
    - 고객이 분실한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 을 주워 환급금을 수령(형법상 횡령죄)한 직원을 감사에게 미보고
  - ○○공사('10.3월, 감사원)
    -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봉급 4분의 1 감액' 으로 의결된 직원을 '견책' 으로 감경
- ⇒ **속방망이 처벌** → **국민 불신 초래**

##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약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운영현황〉



- ▶ **규정 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 개선방안

-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                      | 10만원 미만 | 10만원 초과<br>100만원 미만 | 100만원 초과<br>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
|----------------------|---------|---------------------|----------------------|----------|
|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 견책 ~ 정직 |                     | 해임                   | 파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          |

## 4.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강화

###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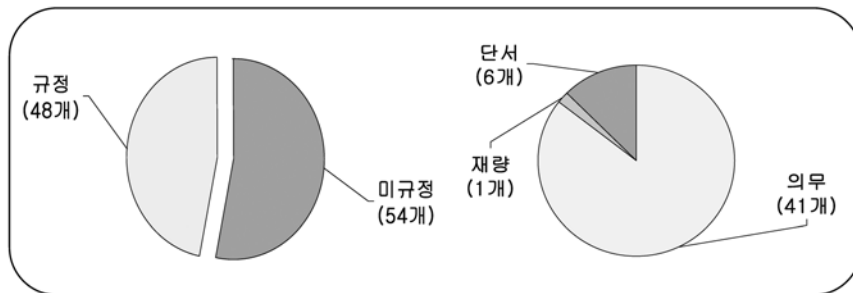
| 비위<br>유형                                              | 금액<br>수수행위 | 100만원<br>미만 | 100만원 이상<br>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br>500만원 미만 | 500백만원 이상<br>천만원 미만 | 천만원<br>이상 |
|-------------------------------------------------------|------------|-------------|----------------------|----------------------|---------------------|-----------|
|                                                       |            | 수동          | 견책                   | 감봉                   | 정직                  | 해임        |
| 의례적인 금품·<br>향응수수의 경우                                  | 능동         | 견책·감봉       | 감봉·정직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 수동         | 감봉          | 정직                   | 해임                   | 파면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br>향응수수를 하고, 위법·<br>부당한 처분을 하지<br>아니한 경우 | 능동         | 감봉·정직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                                                       | 수동         | 정직          | 해임                   | 파면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br>향응수수를 하고, 위법·<br>부당한 처분을 한 경<br>우     | 능동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           |

##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 ❖ 문제점

- 부패행위자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 미비

####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제외 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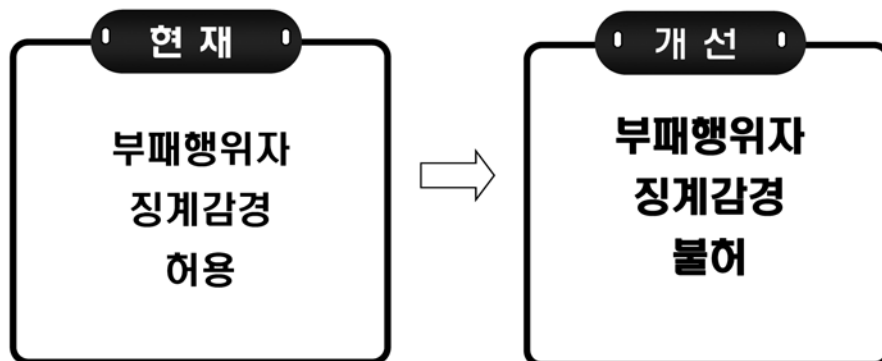


▶ 규정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 ◆ 개선방안

-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자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5. 부패행위자 징계 감경 제한

【우수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58조의3(징계양정의 기준)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을 받은 공적

##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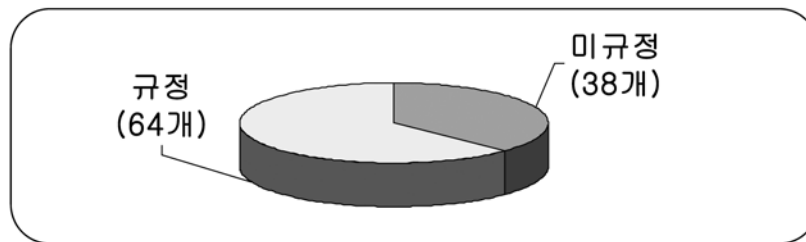
- 행정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3천만원 이상 고액횡령자 113건 중 35.4%(40건)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처리
- ○○기관은 2억 7,100만원 횡령하여 주식투자한 직원('08년) → 징계 면직처리○/고발X

##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 ❖ 문제점

- 부패행위자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처리

#### 〈공금횡령범죄 형사 고발기준 규정 현황〉



- ▶ 규정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

## 6.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 ◆ 공금횡령범죄 형사고발을 위한 자체 세부기준 마련

【우수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

제5조(고발기준)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Ⅲ. 계약규정 부패영향평가**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 문제점**

-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 지속적 특혜시비 발생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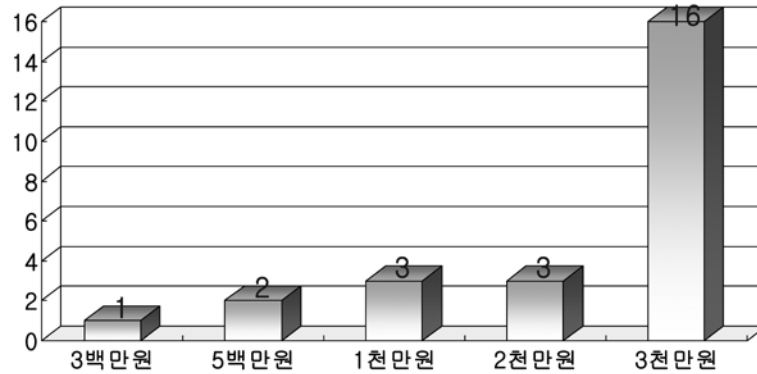
- 물품구매·용역 : 5천만원 이하
- 건설공사 : 2억 이하
- 1인 견적입찰 : 2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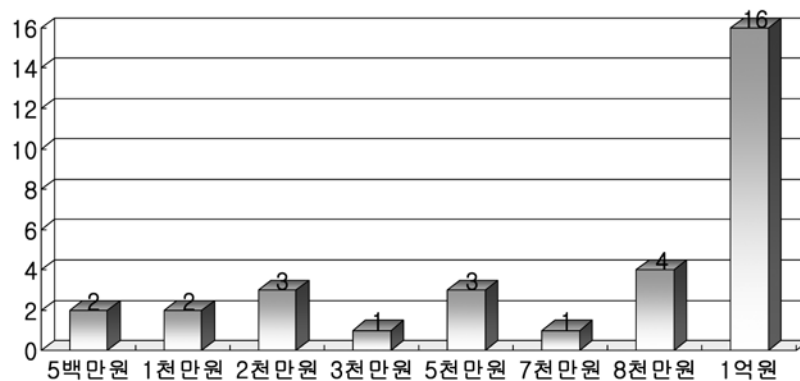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물품구매·용역”) : 25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한국철도공사 등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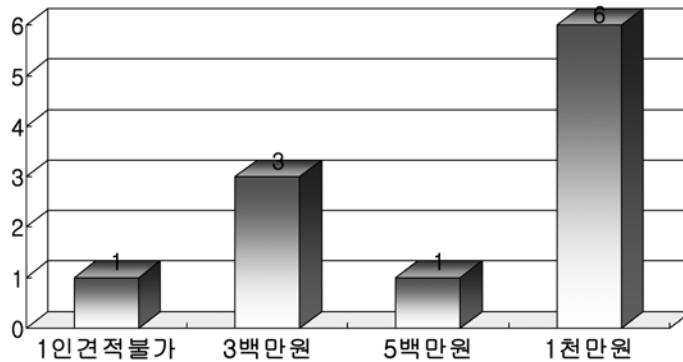
〈수의계약 금액 규정 현황(“공사”) : 32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전(5백), 건강보험심사평가원(2천) 등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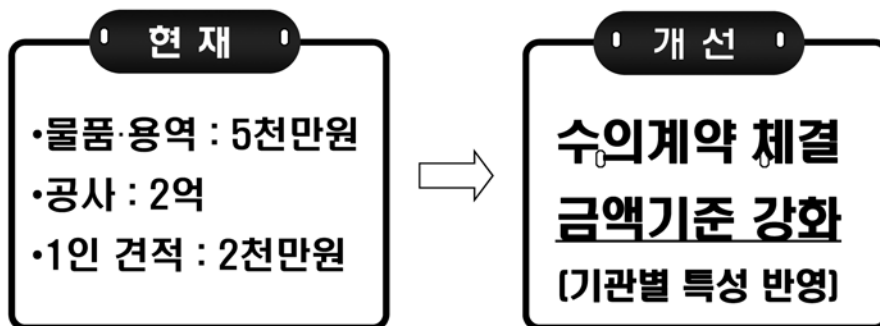
〈1인 견적입찰 가능금액 규정 현황 : 11개 기관〉



▶ 규정 기관 : 한국감정원(3백), 한국문화예술위원회(5백)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 개선방안 :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 기준 강화



◆ 대부분의 기관 : 국가계약법 준용  
일부 기관 : 법령보다 강화된 금액 기준 적용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 【우수사례】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수의계약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호 각호에 의한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공사(간이공사 포함)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2. 용역, 구매 :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 1. 수의계약 체결 금액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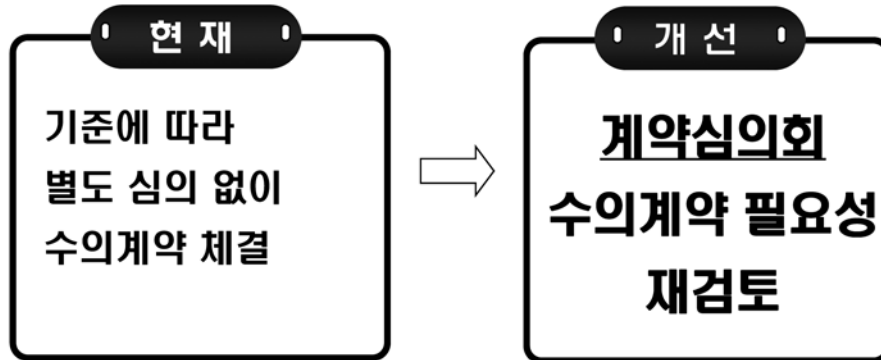
### 【우수사례】 한국감정원 「회계규정」

제141조(견적서)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월이내에 동일품목을 동일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 2.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제11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 ❖ 문제점

-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 빈발
- 원·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하도급 현황 등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미공개

###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 ◆ 개선방안

-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 계약정보(하도급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 【우수사례】 경기도

- ‘09년 10월부터 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 3. 수의계약 사유 및 세부계약정보 공개

**【우수사례】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계약 업무처리지침」

제23조(공사계약관리) ①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차량·시설·전기공사의 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 계약 담당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계약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관련공사의 사업부서 담당자는 이외에도 공정율(매월말 기준), 하도급사항, 현장배치기술자, 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공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현재 청렴계약제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형태 등으로 운영
- ❖ 우리 위원회는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상 근거 마련,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규정 법령화 등을 권고('09.12월)
  - 1)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반영 추진 중
  - 2)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법 반영 추진중
  - 3) 교과부 : 학교단위 청렴계약제 도입 추진중

####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시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 필요
  - 특히 제재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재기간 경감을 불허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
  - 현재 한국전력만 제재기간 경감 불허를 규정

####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 개선방안 1 : 청렴계약제 도입 및 대상 확대
  - 모든 계약 체결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 위반업체 :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무화
- ◆ 개선방안 2
  - 청렴계약 위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의 경감 불허
  - 청렴계약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 경감 불허

##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4. 청렴계약제 운영 활성화

###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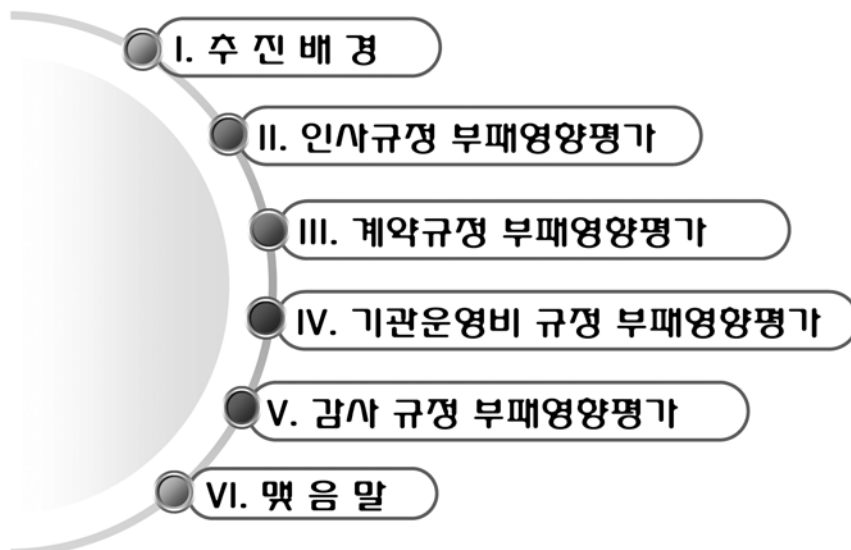
제4조의2(청렴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 부패영향평가(2)

### – 기관운영비, 감사 규정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패영향분석과)



## IV. 기관운영비 규정 부패영향평가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문제점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미명시 다수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 업종제한〉

| 구분  | 업 종 제 한   |           |            |
|-----|-----------|-----------|------------|
|     | 기재부 지침 반영 | 노래방 제외    | 업종 미명시     |
| 기관수 | 84개       | <u>2개</u> | <u>16개</u> |

▶ 규정 기관 : 국제방송교류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개선방안

- 노래방, 실·내외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포함) 등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모두 반영

- ※ '07.10월 국가청렴위원회는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을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권고
- '10년 공기업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도 반영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재단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  
로 운용하며, 재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에 의하여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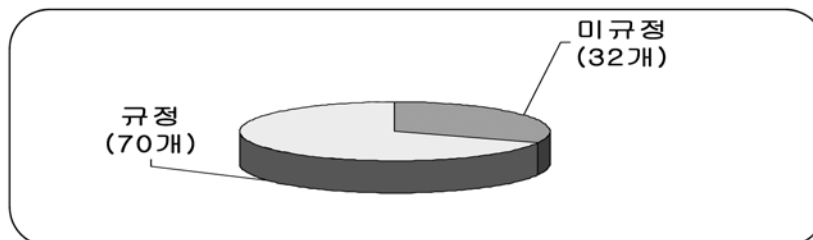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문제점

- 법인카드 결제시 실명서명 의무화 규정 미비

#### 〈클린카드 제도 운영 현황 - 실명서명〉



- ▶ 규정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개선방안

- 법인카드 전표에 소속 및 실명 기재 의무화

### 【우수사례】 국제방송교류재단 「법인카드관리지침」

#### 제3조(법인카드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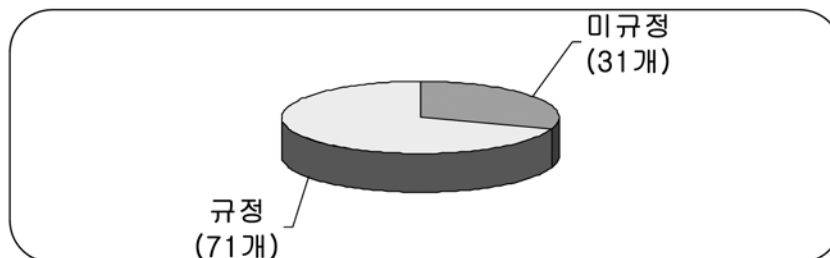
- ⑤ 법인카드 전표에 서명할 때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문제점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에 대한 제재 미흡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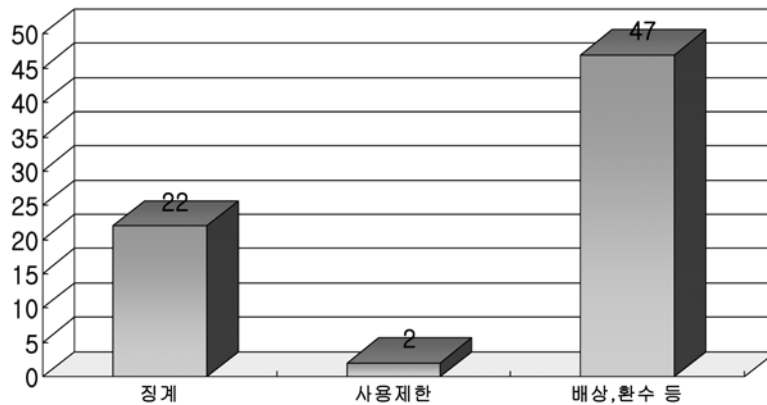


- ▶ 규정 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71개 기관의 제재조치 운영 세부현황〉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 개선방안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사용제한업소 사용 등) 징계요구 등 제재조치 강화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적용

## 1. 법인카드 사용 적정성 제고

###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 「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 문제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역에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라고만 명시
-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객관적 통제 장치 미흡

##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구체화

#### 【예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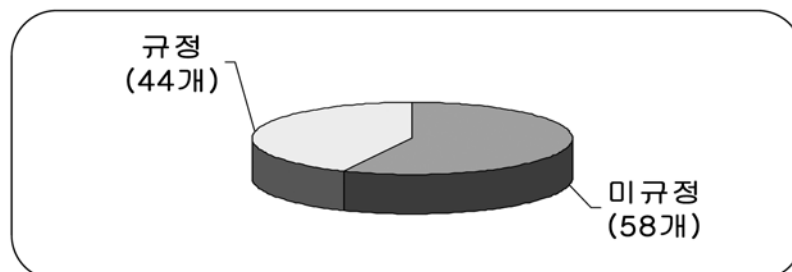
1. 집행목적(사업추진, 업무협의 등)
2. 집행자명, 집행(예정)일, 집행장소
3. 집행사유(구체적인 회의·협의 내용)
4. 집행대상 : 집행대상의 회사(기관)명, 부서, 성명
5. 집행내역 : 품목(석식·기념품 등), 참석인원, 총 지출액, 1인당 지출액 등

##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문제점

- 심야, 휴일 등 업무관련성이 적은 경우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미흡

####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현황〉



###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4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세부규정 현황〉

| 구 분 |    |       | 기관수     | 기관명        |
|-----|----|-------|---------|------------|
| 휴일  | 심야 | 자택 근처 | 합계[44개] |            |
| 제한  | 제한 | 제한    | 39개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 제한  | -  | -     | 3개      | 00공사 등     |
| 제한  | 제한 | -     | 1개      | 00기관       |
| -   | 제한 | -     | 1개      | 00기관       |

###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 ◆ 개선방안

- 심야 및 휴일사용, 자택근처 사용 등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추진비 원칙적 사용 금지
-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출장 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3. 심야·휴일·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재무업무 처리지침」

####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다만 1호 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 (4) (생략)

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 하여야 한다.

## 4. 상품권 및 화환 관리 강화

### ❖ 문제점

- 상품권 및 화환 구매에 대한 관리 미흡

〈상품권 및 화환 구매·배부 관리 현황(48개 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
| 상품권 및 화환 |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7개)   |
| 상 품 권    | KOTRA, 한국전기안전공사 등(25개)   |
| 화 환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16개) |

## 4. 상품권 및 화환 관리 강화

### ◆ 개선방안

- 상품권 및 화환의 구매 및 배부내역 관리 강화
  - 구체적인 구입내역(일시, 수량, 구입처 등)
  - 배부내역(배부수량, 수령인명) 기록·관리
- ※ 한국감정원은 상품권 구입 금지